

사 규 번 호	
관 리 부 서	
등 급	일 반

ESG 위원회 규정



ESG위원회 규정

2021.03.26 제정

제 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삼양식품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ESG 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기능)

- ①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,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Corporate Governance) 부문(이하 포괄하여 "ESG")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쟁점을 발굴,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 및 검토 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이를 위한 주요 투자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대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 4 조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 (이하 "위원" 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 (이하 "위원장")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③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, 이사회는 해임, 이사회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사유발생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 전까지 충원을 해야 한다.

제 3 장 운영

제 7 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 5조 3항을 준용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일시, 장소,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구두, 전자우편, 문서 등 1개 이상의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개최주기)

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 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제 10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회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의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원의 수는 출석한 의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 - 1.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관련 기본 방향 설정
 - 2. ESG 이해관계자 Communication
 - 3. 회사의 ESG 관련 이행사항 검토 및 심의

제 11 조의2(외부 자문 등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ESG에 관한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3 조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,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.

제 14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위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타

제 15 조(간사)

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 16 조(규정의 개폐)

-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